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소통을
하라! **토론회**

이제 당신도 미네르바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 = 댓글은 언감생심!

대통령을 '2MB' '취박' 이라 부르면? '모욕'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실명제 = 주민번호 걸고 쓰라!

악플 감소는 커녕 제2의 옥션,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터넷도청법 = 모조리 봐주마!

사적 통화, 대중교통 이용, 인터넷 사용, 위치 정보 등 사생활 모두가 노출됩니다.

“ 인터넷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정보 공유, 사회적 담론 형성, 인터넷과
사회발전을 가능케 한 사이버 공간! ”

- 일시 : 6월 16일(화) 14: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주최 :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 후원 :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 개요

- 일시 및 장소: 6월 16일(화) 14:00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주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 후원: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 순서

- 인사말/ 박홍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축사/ 권영길 의원, 최문순 의원
- 사회: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 주제발제

주제 1.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전용희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주제 2.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안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지정토론

1.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 “남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말라”는 법의 위헌성

2.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심각한 ‘표현권의 침해

3. 강희수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 인터넷 영향력 확대와 노동자들의 정보인권 보호

4. 강성준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에 담긴 국정원의 의도

○ 플로어 토론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이용자/소비자의 의견

- 전용휘 /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관련 규제법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마치 우리나라에 인터넷관련 규제법률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이 일종의 치외법권지대처럼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터넷에도 규제제도가 필요하다는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온갖 종류의 인터넷 관련 규제법률이 도처에 흩어져 있다.

대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이 인터넷 규제법률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법률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이 모두 인터넷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터넷 관련 규제법률을 만들려면, 우선 그 전제로서 현행 인터넷 관련 규제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 또는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규제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관련 규제제도에 대한 논의의 경우에는 우선 현행 제도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터넷에는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규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식의 단순논법만이 반복되어 주장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관련 규제제도가 나타난 9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별 변화없이 관행처럼 되풀이 반복되어온 일이다. 그때마다 당시의 주무부처였던 정보통신

부는 지금과 똑같이 인터넷의 역기능, 인터넷에서의 피해확산의 속도와 피해크기의 심각성, 사이버폭력, 인터넷 익명의 위험성 등을 역설하였고, 그러한 이유를 들어 이미 제도화 된 온갖 종류의 인터넷 규제제도들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법개정 논의 역시 과거의 주장에서 하나도 새롭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관련 규제제도들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거의 없다. 이미 제도화된 각종 규제제도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평가조차도 눈에 띄질 않는다.

1. 인터넷 내용규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 관련 규제제도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회적 논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왕의 논의에 새롭게 보탬 이야기는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기존의 논의에 어떤 새로운 논의를 덧붙이기 보다는 차체에 현행 인터넷 규제제도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인터넷 관련 규제제도 논의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1)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시각에서 보아야 하며, 그것도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비규제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전체 규제틀을 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방송규제가 제한된 공적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소수에게 독점 허가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공공적 규제를 해왔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은 출발부터 통신서비스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통신에 대한 규제는 통신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비밀을 보호하되, 통신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디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사실의 확인기록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해왔다.¹⁾

즉, 전통적으로 통신규제가 통신내용에 대한 규제를 기피해 온 이유는 그것이 사적인 개인간의 사적인 교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인터넷을 통신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신이 모두 사적인 성격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블로그를 포함해서 인터넷 상에서의 교신이 공적 성격보다는 사적 성격이 여전히 강한 것은 사실이며, 설령 공

1) 통신비밀보호법은 바로 이러한 통신내용의 비밀을 위한 것이며, 이 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교신내용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적 성격이 있는 교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의 제한적 특성으로 인해 -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접근이 방송처럼 선택의 여지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추구하는 자가 직접 그 정보를 찾아가려는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선택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 그 공공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내용규제 자체는 극도로 제한되어야 한다.²⁾

또한 산업으로서 포털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 관련 서비스 산업은, 거대 기간통신망이나 주파수 자원과 같은 중요도를 갖는 인프라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통신서비스사업자와는 달리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규제 대상이 아니다.³⁾ 부가통신사업이 비규제 대상이 아닌 이유는 이 사업이 거대통신설비 등의 구축없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는 것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문턱이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이 최적수준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가통신사업은 국가규제 대상이 아니라 시장적 규제의 대상이며, 다만 시장에서의 독과점행위와 같이 공정경쟁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경쟁정책적 규제를 받는다.

2)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 개개인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정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최소화하여 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규제만을 보아 온 소위 매체전문가들이나 규제당국은 매체의 공공적 책임이라는 시각에서 내용규제 문제를 사고하고 처방하는 생각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일반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정보상품을 생산,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정보접근권을 부여받는 언론매체처럼 그 정보제공 내용이 특정 사업자에 의해 기획되고 편집, 가공되어 제공되는 매체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에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

2) “인터넷은 공중과 방송과는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과 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1002. 6. 27. 99헌마480 전원재판부

3)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세가지로 구분되며,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진입규제나 소유지분규제, 겸업규제, 양수, 합병규제, 사업휴폐지 규제 등을 모두 받지 않는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 참조)

되지도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오히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일까 하고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자신의 표현행위 자체를 즐기고 몰입하며, 그것을 자아의 실현수단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참여, 의견제시권리를 향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 이용자들의 자기 표현행위는 대부분 자신의 일상적 시민생활의 자연스러운 사이버공간으로의 확장일 뿐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는 곧바로 시민생활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아무리 개개인의 자유로운 표현행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것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시민생활의 영역에서 정도가 과한 표현이나 지나치게 격하거나 거친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며,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적 도덕이나 규범으로 제어되어야 할 것이지 그러한 모든 표현들이 법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인터넷에서의 표현행위가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시민생활의 연장이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적 시민생활에서 허용되는 대부분의 표현이 인터넷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지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3) 인터넷에서 서비스 중개자(Intermediary Service Provider)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시장원리에 따르는 시장적 규제나 경쟁정책적 규제가 아닌 한, 인터넷 일반 이용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제약과 제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이것을 “영리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틀에서 보다 “인터넷 이용자 표현행위의 환경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는 인터넷 일반 이용자들에게 이용환경 - 곧 표현환경을 제공해 주고, 일반 이용자는 그러한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접근환경을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능동적으로 자신이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중개사업자는 이렇게 소비자들 자신이 자신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매개로 하여 수익모델을 실현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시장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즉,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인 정보접근이 인위적으로 제한되거나, 이용자의 선택이 왜곡되거나 선택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닐 때에는 관련 규제체도가 오히려 일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한하거나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서비스 중개사업자에 대한 규제제도는 경우에 따라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로 기능할 수도 있는 만큼 일반 이용자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하고 오남용될 가능성이 없도록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요건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피해의 사전예방 혹은 피해의 사후구제와 관련된 규제제도에 있어서는 권리침해주장자와 게시물게시자의 권리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며,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과 같은 중재제도를 거치도록 하되, 단순히 침해주장만을 이유로 표현행위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몇가지 의견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된 주제들은 별첨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금지, ② 인터넷 실명제, ③ ISP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임시조치, ④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네가지이다. 이 네가지 사안 중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조정제도는 현재 제기된 이견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아 본 발표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현행 인터넷 내용규제제도의 문제점과 제기된 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규제 혹은 비규제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금지와 관련하여

현재 정보통신망 제44조의 7은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현재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내용규제 조항이다. 이 법조항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불법정보는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조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불법정보이며, 그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결국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조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에서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 조항은 이미 2002년에 헌법재판소가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소위 불온정보 관련 조항을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당시 정보통신부가 법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것인데 이미 당시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법안이 여전히 위험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지적⁴⁾한 바 있을 정도로 위험성 논란이 있었던 조항이다.

이만큼 문제가 많은 조항이어서 이미 위헌소송에 제기된 상태이지만, 당시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필요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나타날 소지”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사례에 의해서 현재화된 상태이다.

현행 제도에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점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대상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제1항의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이다.⁵⁾ 이 부분은 남용의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4) "마. 개정안에 대한 검토

(전략)

다만, 이와 같이 규제대상의 요건과 규제절차의 적법성이 일부 보완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제시되었듯이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규제제도 자체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음.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이 표현물삭제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명(ID)의 사용금지 또는 사이트폐쇄, 계약거부 또는 해지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과 정보유통권이 필요이상으로 제약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정보유통의 신속성, 익명성 및 파급효과와 사법판단에 의존할 경우의 피해방지문제 등을 감안할 때 행정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는 점과, 사법판단이 배제된 상태로 행정부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권의 자의적 판단에 기인하여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필요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간의 범의판단이 면밀히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행정권 자체의 규제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이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통신의 특수성과 범의침해수준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는 점도 있음.

따라서 법률에서 그 명령권의 내용을 제한하여 규정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권규제의 정당성확보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결론적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에 관한 법률정비문제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청회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임."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檢討報告書 2002. 1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5) 작년(2008. 7. 1) 조중동광고주 리스트 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정중섭위원(서울대 법대 헌법학교수)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9호 상의 ‘범죄’는 내란, 외환, 범죄단체 조직, 마약, 통화, 유가증권, 문서위조, 각종 성범죄, 살인, 테러, 사기, 유괴, 납치, 방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이 정하고 있는 불법정보 유통금지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주장하면서 예컨대 업무방해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정중섭 위원은 이때 문제의 광고주리스트가 업무방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문제는 보이콧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이콧의 대상자와 각종 거래를 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보이콧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전상품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제2차 보이콧’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인용한 2002년 법개정 당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행정권의 자의적 판단에 기인하여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필요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이 문제의 조항은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가기도 전에 아무런 행정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방송통신위 설치법 제21조 4호)에 의해서 사실상 검열처럼 기능하고 있다.⁶⁾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더라도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 중에서는 단지 7호에서 9호(국가기밀누설정보, 국가보안법위반정보, 기타 범죄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해서만 관련 중앙부처의 장이 해당정보에 대한 유통금지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⁷⁾ 그 밖에 제1호에

이러한 ‘제2차 보이콧’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90여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유하고 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제7조 제4호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고 주장(2008. 7. 1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하여 광고주 리스트 삭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정중섭 위원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조항이 얼마만큼 남용가능성이 큰 것인지 잘 보여준다. 이같은 정중섭 위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중동광고주리스트 소송의 1심 법원판결은 ‘2차 보이콧’이나 ‘2차 보이콧의 위법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광고주리스트의 게시 자체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실제로 방통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9호 관련 법률을 다음과 같이 무려 50여개로 보고 있다. 이 정도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앙정부부처의 온갖 규제권한을 혼자서 다 수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경륜,경정법, 경범죄처벌법, 관광진흥법, 국가보안법, 국민체육진흥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8호(의약외품범위지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표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사법, 여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저작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과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주민등록법, 주세법 및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수자료 취급지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형법, 화장품법, 도로교통법 - “규정 및 관련법령”(통신심의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 6)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불법정보에 대한 내용규제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정보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의해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7호에서 9호(특히 9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심의하게 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3항의 절차규정도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9호를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의 경우에도 중앙행정부처 장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호의 기타범죄의 교사 또는 방조에 관련된 통신심의규정 조항을 적용하여 광고주리스트 게시를 삭제할 시정요구하였다.

서 6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통위설치법 제2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할 수만 있게 되어 있다.⁸⁾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규정 자체도 무시하고 일종의 탈법, 편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1조 4호를 적용하여 마구 “시정요구”를 남발하고 있다.⁹⁾

더욱 놀라운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시정요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1조 제4호의 조항 내용 자체가 시정요구의 대상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소위 “불온통신”과 마찬가지로 명확성의 원리에 반하는 문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조항에 대해서도 현재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¹⁰⁾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에서 규정된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는 다른 내용으로 시행령에서 역으로 법률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부분인데 방통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모두 무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 독자적인 시정요구 조치에 의해서만 게시물 삭제를 집행하고 있다.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와 관련된 현행 규제제도에서 또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되고 있는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제재조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25조 5항의 규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기 때문에 제재조치의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설치법 제25조 5항은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처분을 “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2항에서는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호부터 6호까지 규정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불법정보의 유통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므로 행정명령으로 금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시정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권고조치를 할 사항이 아니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1조 3호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현재 방통심의위원회가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는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4호와는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방통위 설치법 제2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문순 국회의원이 공개한 바에 의하면, 최근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설치법 25조에 따라 방통심의위원회의 제재처분 요청에 따라 제제한 경우는 265건에 불과한 데 반하여, 방통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에 의해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을 한 경우는 무려 1만6,849건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 건은 1,312건이나 된다고 한다. (인터넷 걸음 “방통심위는 빅브라더”, 김효정 기자, ZDNet Korea 2009. 7. 8일자 기사 참조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429134154)

10)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치의 문제이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명예훼손”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명백할 수 있느냐 여부의 문제이다.¹¹⁾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명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도 이를 사전제재금지의 예외로서 행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최근 김명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예훼손의 명백성에 대하여 별개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데¹²⁾ 이 문제는 실제 내용규제 현장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예컨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관련 시정요구조치들 중에는 대통령이나 고위직 공무원, 언론인 등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내용물이 그것이 공공이익을

11) 이 문제는 사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위 99헌마480)이 던져놓은 문제이기도 하다.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 예컨대 아동포르노, 국가기밀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 이 아닌 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합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비록 예시이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이 내용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로 제시함으로써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1항 제2호에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이를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삼게 만든 계기를 제공하였다.

12) 김명재 판결문에서 별개의견은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실제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고 있더라도 그와 동시에 목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문제, 그 표현이 사실의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나,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문제, 나아가 위법성 조각 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더구나 인터넷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특정 주제나 공동의 관심사에 관하여 비판이나 논쟁이 벌어져 그 과정에서 게시되는 표현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 외의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와는 달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논평의 표명인지 구별하는 기준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그에 기한 반론 가능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는 등, 법률가의 입장에서 그러한 명예훼손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곧바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고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김영란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다수의견에서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무가 인정되기 위한 우선적인 요건으로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가령 피해자가 사적 존재이고,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며, 사안 역시 전혀 공공성, 사회적 없이 사적인 생활영역을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방법이 단순히 무례한 정도를 넘어 심한 모멸적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중략) ... 그리고 게시물 내용 자체보다는 피해자의 허락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는 달리, 명예훼손적 게시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게시물 내용 자체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게시물로서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불법성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주관적인 불법성 인식여부에 따라 그 불법성의 현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위한 것이고, 사회정치적 의사의 표현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라는 이유에서 삭제 시정요구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¹³⁾

그렇다면 대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명백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법전문가도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정요구나 행정명령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적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히 추가할 다른 의견은 없다. 문제는 이미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이 애초부터 위헌소지가 있었던 법조항이었고, 명예훼손의 경우처럼 비교적 판단의 준거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해도 이것을 행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미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정에서 거기에 다시 사이버모욕죄를 추가하는 것은 전혀 현행 제도의 개선이 아닌 명백한 개악이다.

현행 형법의 모욕죄가 친고죄로서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반하여 사이버모욕죄 신설안은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나경원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장윤석 의원 형법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반의사 불벌죄를 제안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래 형법상의 모욕죄도 사실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후진적인 제도인데 이것을 새로운 사이버 범죄로 입법하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모욕죄 뿐 아니라 명예훼손죄도 대부분 사인간의 분쟁에 적용되는데 이것을 형사적인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사인간의 분쟁에 공권력이 개입되는 것도 문제이고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이 사인간의 분쟁에 이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욕죄를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도 사이버모욕죄 신설 제안은 그것도 가중처벌을 하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로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규율하겠다는 것이니 그야말로 퇴행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의 사진에 대한 삭제 시정요구 조치나 유해 시멘트에 대한 사회적 고발과 관련된 최병성 목사의 소위 “쓰레기 시멘트”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 시정요구 조치에는 모두 **심의 과정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의 2호)에 해당된다는 이유**가 적용되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앞서 이미 기술했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1조의 4호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부속시행령 제8조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된다.**

2)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실명제는 도대체 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괴망칙한 제도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터넷 실명제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에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정보통신망법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의 제23조 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과 소비자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44조의 5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바로 23조의 2항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법으로 보장하고, 특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의무도 사업자에게 부과한다면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인가?

도대체 왜 게시판 서비스 이용자의 실명 정보수집(보다 정확하게는 주민번호 대조를 통해서 확인된 개인정보)이 게시판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가?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서비스를 소비자가 이용할 때에는 서비스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소비자는 글을 쓰거나 열람하고 타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얻게 되며, 사업자는 그러한 소비자의 글쓰기나 열람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트래픽을 근거로 하여 광고등을 통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계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최소정보”가 전혀 아니다.

아마도 이에 대해서는 입법자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6 제1항)는 점을 입법 이유로 설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침해사실이 나타난 후에 소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사실도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인가? 백화점에서는 모든 고객이 진열된 상품을 훔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이 신원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러한 규제제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국가는 헌법적인 권리인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법의 부속시행령

제29조 3호에서는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거나,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라는 뜻이다. 즉, 현행 인터넷 실명제는 서비스 이용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개인정보의 보관에 따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현행법제도 안에 일단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수집되면,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사당국에 의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단순히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이다. 유감스럽게도 규제당국이나 정부, 여당은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법조항에 의해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터넷 실명제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군수사기관, 국세청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수사편의를 위해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명백하게 유해한 최악의 인터넷 규제제도이다.

혹자는 인터넷 실명제가 없더라도 대부분의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해왔으므로 실명제 여부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래 들어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사업자들의 그릇된 개인정보 이용행태에서 비롯된 범법사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작년 옥션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를 타 업체의 마케팅에 쓸 수 있도록 제3자 제공한 문제¹⁴⁾, 고객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업체에서도 비정상적으로 관리,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준 GS칼텍스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일반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에 있어 상당한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옥션사의 경우에는 거의 9백만에 달하는 고객의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오남용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의 변경은 현재 전혀 불가능하다 - 그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라고 국가가 사업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를 인권 침해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다.¹⁵⁾

14)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취급위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가 검찰청에 작년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3개 사업자(케이티, LG과워콤 포함)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을 이유로 고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청은 사건 수사 담당자를 몇번씩이나 교체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15)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에서의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 참여의 권리는 인터넷의 접근성과 익명성이라는 열린 구조에서 기인하며, 헌법 제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나 검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선거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 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하고”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점차로 더 나은 신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원”(personal identity)을 담보로 하는 거래관행에서 신용(credit)을 담보로 하는 거래로 거래관행 자체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¹⁶⁾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현금이나 신용을 제공하지 개인신상정보를 담보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현금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서비스번호(통장번호나 신용카드번호와 같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번호)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역시 주민번호없이 세무당국과 금융당국간의 정보교환을 통해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주민번호 이용이 엄청나게 확대된 것은 사업자들의 관리상의 편의와 후불제 판매(외상 거래 등)에 있어서의 장점 때문이고, 개인소비자가 후불거래에서 채무 불이행시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권추심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후불거래에 의한 편의성 추구가 이러한 관행을 낳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서 편의만을 추구할때 그것이 신용불량자의 대량양산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졌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명제가 이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 제도가 폐기되어야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그런데 실명제가 개개인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표현행위를 하는 자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 하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며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고 해서 표현행위가 위축되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표현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조건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단히 편협한 주장이다. 그리고 사실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제외하면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표현행위를 할 때 실명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야 말로 인터넷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고 하는 인터넷 특수성 주장의 대표적인 규제제도인 셈이다.

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중략)“불법적인 정보개시와 유통에 대하여는 현행의 법체계로서 사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적으로 네티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하 하략) 등등의 이유로 인터넷언론사의 실명인증제는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4. 2. 16.

16) 성명서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정상적인 시장질서로 전환을 촉구한다. - 상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어야 한다.” 2008년 4월 2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일반 이용자 개개인 입장에서 볼 때 이용자들이 표현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아야 할 정당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자신이 어떠한 표현행위를 통해서 무슨 경제적 이득과 같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컨테스트에 작품을 출품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신의 뜻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가지 동기에 따라 어떤 표현행위를 하는것인데 자신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어떤 경우이든 표현행위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자신의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도 꺼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법은 표현행위자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왜 그래야 하나? 반대로 자신의 표현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도 있지만 너무 자신이 제자랑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법은 정체를 밝히라고 한다. 왜 그래야 하나?

어떤 때에는 자신이 썼다면 오히려 선입견을 갖고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차명이나 필명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명제는 그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어느 사회에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있고 이들은 본인의 생각을 솔직이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차별과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수줍어 하거나 천성이 겸손하거나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도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글을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만을 알리고 싶을 뿐, 자신이 어떤 일에 휘말려 드는 것을 꺼리는 이들도 있다. 양심고백과 내부고발은 많은 경우 익명 글쓰기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을 필요로 하는 무수한 다양한 표현환경과 조건들을 모두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신원정보 노출을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모든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사실상 글을 쓰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제도이며 본질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제도이다.

최근에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적용에 즈음하여 구글코리아가 한국의 인터넷이용자들에게는 아예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실명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행 실명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또다른 측면에서 드러내 주었다.

비단 구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자들은 대개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들을 연결시키거나 일반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가장 효과적으로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광고 등으로 이익을 취하는 수익모델을 갖고 있다. 이러한 수익모델의 성공여부는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느냐 하는 데 있다. 이용자들이 양질의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으면 사업자는 훨씬 더 좋은 수익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이용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떤

장애요인을 안게 되면, 사업자의 수익기회는 점차로 줄어들게 된다.

글로벌 기업이라도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의 요구를 어떻게든 수용해야 하는 처지지만, 자신의 수익모델 자체에 제약이 될 경우라면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구글은 한국의 실명제가 자신의 수익모델에서 그 중심 위치에 있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제공 행위에 본질적으로 걸림돌이 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구글이 이용자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문제(정보제공 없이는 정보열람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므로 정보열람/정보보기의 제약에 비해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이 수익모델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된다)에서 훨씬 더 민감한 것은 일단 이 같은 정보제공의 제약조건을 한 국가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오늘날 국제교역의 기본원리인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유사한 형태의 변형된 정보제공의 제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붕괴를 뜻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2006년 구글 부회장은 당시 중국에서의 구글검색서비스와 관련된 의회청문회에서 “검열 문제가 곧 국제교역에서의 중심적 요소”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다.¹⁷⁾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ISP의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 의무화에 대하여

현행 인터넷 규제제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적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및 임의의 임시조치(동법률 제44조의 3)는 가장 신속하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난 17대 국회말에 법안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제도이다. 이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평가와는 관계없이 이미 임시조치 제도는 수도 없이 많은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그 자체로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의무적 임시조치 제도에 의하면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권리침해 여부

17) Elliot Schrage / Vice President, Global Communications and Public Affairs, Google Inc.

"Testimony: The Internet in China"

Testimony of Google Inc.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Subcommittee on Africa, Global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perations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February 15, 2006

<http://googleblog.blogspot.com/2006/02/testimony-internet-in-china.html>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최소한 30일 이내의 접근차단 임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만으로 최소 30일 이내의 게시물 접근차단을 제도화 한 것으로서 1) 권리침해의 대상범위가 포괄적이고,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상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를 꺼려하므로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심의요청을 하게 되는데 앞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관련 내용에서 지적한 것처럼 방통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시정요구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3)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얼마든지 최소 30일 이내 정보접근을 제한하는데 남용¹⁸⁾될 수 있으며 4) 따라서 이의 신청 제도와 같은 게시물 게시자의 표현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균형있게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5) 최소 30일 이내 접근차단 임시조치 이후의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처리된다¹⁹⁾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임의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는 의무적 임시조치제도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그러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은 형사소송의 대상도 되는데 단순히 민사적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닌 형사적 피해 문제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게시물에 대한 접근차단이나 삭제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과도한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민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디지털저작권법(CDMA)에서 “공지에 따른 처리”(Notice & Takedown)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닌 명예훼손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통신품위법(CDA)의 “선한 사마리아 조항”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완전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유럽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불법컨텐츠에 대해서도 미국의 디지털저작권법에서와 같은 “공지에 따른 처리”에 따른 조건적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²⁰⁾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아

18)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 게재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포털서비스 사업자에게 임시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8건의 광고주 리스트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시정요구조치 및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삭제권고 조치를 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광고주 리스트의 게시와 같은 홍보 등의 수단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위법으로 보지 않았다.

1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의 의무적 임시조치에서 30일 이내의 접근차단 임시조치 이후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포털업체 다음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유관 규제당국의 명문화된 결정문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복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네이버의 경우에는 원래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구가 없는 한 30일 이내의 임시조치 이후에는 삭제 처리를 하고 있다.

20) 미국의 CDA Section 230 (선한사마리아 조항)

(c) Protection for “Good Samaritan”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1) Treatment of publisher or speaker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2) Civil liability

닌 일반적인 불법컨텐츠에 대해서 “공지에 따른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개별 국가마다 처리방식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존재를 경찰에게 신고하도록 하거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음란물과 같은 특정범위내의 정보로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²¹⁾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최근에 나온 소위 “김명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²²⁾에서는 타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표현물에 대해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로 대상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held liable on account of—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the provider or user considers to be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excessively violent, harassing, or otherwise objectionable, whether or not such material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or

(B) any action taken to enable or make available to information content providers or others the technical means to restrict access to material described in paragraph (1).

e-Commerce Directive(2000/31/EC) Article 15

No general obligation to monitor

1. Member States shall not impose a general obligation on providers, when providing the services covered by Article 12, 13 and 14, to monitor the information which they transmit or store, nor a general obligation actively to seek facts or circumstances indicating illegal activity.
2. Member States may establish obligations for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promptly to inform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ies of alleged illegal activities undertaken or information provided by recipients of their service or obligations to communicat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t their request, information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recipients of their service with whom they have storage agreement.

미국과 유럽의 불법정보에 처리에 관한 ISP의 책임관련 규제제도의 차이 및 공통점에 대한 분석은 Benoit Frydman and Isabelle Rorive, *Regulating Internet Content through Intermediaries in Europe and the USA,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23 (2002), Heft 1, S. 41-59 참조

21)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인권운동가인 Meryem Marzouki가 발표한 보고자료를 참조하였다. Meryem Marzouki, "10 Year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Europe: Empowering or Infantilizing Citizens?", 17th Annual Conference on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Autonomy on the Electronic Frontier" Montreal, QC - May 1-4, 2007 이 보고에서는 불법정보 사례를 아동포르노에 관한 것만에 한정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유럽국가중 벨기에와 프랑스만이 법률에 의해 불법정보의 신고를 의무로 부과하고 있고, 여타 유럽국가들은 계약이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22) 대법원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더 나아가서 이 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1)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책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와 44조의 3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명문화된 별다른 엄격한 요건 없이 막연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 조차도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수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에 의한 사전제재 금지의 예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그것은 명확성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행정권력도 아닌 일반 사기업에게 이런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²³⁾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삭제 및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지게 될 부담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상당부분에 대한 판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요청하게 있다. 포털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법원은 그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구체적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와 같은 권고적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망법 44조의 2에 따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권한이나 의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즉, 실제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실상의 규제적 조치인 “시정요구”에 의해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의무적 임시조치 및 임의적 임시조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치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3) 최근에 있었던 국회 미디어법특위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당추천인쪽 공술인으로 나온 전 NHN 근무자는 지난 촛불정국에서 포털업체가 2MB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다가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서 타 경쟁 사이트로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나니까 그러한 표현을 다시 방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이러한 행태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사적 검열이 만들어 내는 문제의 단적인 예이다.

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 게시물 58건에 대한 삭제 시정요구와 유사사례에 대한 삭제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삭제 게시물 복구를 요구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살피건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경우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를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경우 “다음”은)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일차적 자발적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라고 하여 포털의 게시물 삭제조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 제44조의 2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2728 인터넷상의삭제게시물복구등단행가처분

이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임시조치에 관한 개정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안 112조 제4항은 아예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한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미 지적했듯이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조치로서 법에서 의무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나경원의원안의 임시조치 개정안은 게시물 게시자에게 이의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임시조치 신청인(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게시물 게시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분쟁조정부에 요청하도록 했고, 분쟁조정에서는 직권조정도 가능하게 했으며,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모든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임시조치는 신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분쟁조정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로부터 72시간(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통보하도록 한 점 등은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명백히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나경원의원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권리침해와 같은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곧바로 분쟁조정부에서 중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행정제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재제도를 통해 경우에 따라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의원안의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부에 대한 제도개선안은 1)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부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2)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법원의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 소송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조치(접근차단) 상태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시조치 상태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유지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 내용규제제도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일반 인터넷 이용환경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려고 하는 법개정 조항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유럽에서는 불법정보의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지에 따른 처

리”(Notice & Takedown)에 따른 절차를 지키면 조건적 면책을 허용하는데 이와 함께 동시에 그렇게 한다고 하여 그것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소위 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제공했다고 해서 (즉, 유해정보의 존재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도록 하고 있다.²⁵⁾

이들 국가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올린 명백한 사생활침해 표현물이나 과도한 성표현물처럼 제한된 범위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선의의 자발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선의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문제의 콘텐츠를 탐색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해당 사업자가 문제의 콘텐츠의 존재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된다는 이유에서, 문제의 콘텐츠가 발견되었을 경우 무조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²⁶⁾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만약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추후 문제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사업자는 그러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정보에 대한 삭제나 접근차단과 같은 제한조치를 무분별하게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곧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행위를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이다.²⁷⁾

25) 각주 20)의 밑줄 친 내용 참조

26)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판결에서 사업자가 가족형 서비스를 위해서 문제의 유해 정보들을 필터링하면서 편집통제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때문에 사업자에게 게시물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되자 사업자들은 아예 선의의(in good faith) 자율적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하게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사업자를 publisher가 아닌 distributor로만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완전면책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자가 publisher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선의의 자율적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Scott Sterling, *International Law of Mystery: Hold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le for Defamation and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Solution*,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Vol. 21, 2001 참조

27) Matthew Schruers, *The History and Economics of ISP Liability for Third Party Content*, *Virginia Law Review* Vol. 88, 2002 참조 이 논문에서는 Stratton vs. Prodigy 케이스에서처럼 게시물의 소재여부에 대해서 통보를 받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무조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publisher로서의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를 Strict Liability 제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의무부과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ISP가 책임을 감당할 경우 떠안게 될 비용부담 때문에 실제 해당 정보의 유해성 여부를 신중하게 조사하기 보다는 공지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 각 삭제행위에 들어가게 되어 실제로는 공격담론의 위축행위를 초래한다고 분석한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어차피 유해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유해정보에 대한 책임비용과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여 총비용을 낮추는 방향을 강구하게 되고, 따라서 책임부담 비용과 모니터링 비용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점 이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사업자의 책임부담비용이 늘어날수록 사업자는 이러한 비용을 내부화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서비스의 제공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실제로 해당 사업자가 광고단가를 인상하거나 경기가 어려울 경우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망의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망의 효용도 증가한다는 소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실제로는 역으로 감소하게 됨으로써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유해컨텐츠가 출현할 가능성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사업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이러한 규제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이용자 모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제도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김명재 관결의 별개 의견도 마치 모니터링 의무화 법개정안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게시물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삭제의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그러한 불법성을 ”인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삭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삭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는 손해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 또는 감시에 나아갈 것이며, 이것은 결국 위 사업자에게 일반적, 포괄적인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그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된 게시물에 대하여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는 오늘날 거의 이론이 없다는 것인데 만약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삭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위와 같이 인터넷 종합정보 사업자에게 부정되어야 할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²⁸⁾

별개의견은 소수의견이고, 이 관결의 다수의견은 문제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를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경우”라고 대단히 한정해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여야 할 의무”라고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바로 별개의견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곧 상시검열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명백히 대법원 관결의 다수의견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별첨>

	현행 제도	법개정안 (추가)
불 법 정 보 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제117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이버모욕죄 니경원의원안>

28) 대법원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p>통 금 지</p>	<p>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p> <p>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p> <p>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p> <p>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p> <p>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p> <p>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p> <p>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p> <p>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p> <p>[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1조]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p> <p>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p>	<p>2의2.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p> <p><방통위 개정안></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사이버모욕죄 나경원의원안> 제70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사이버모욕죄 장윤석의원 형법개정안> 제309조의2 (사이버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9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09조의3 (사자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제3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11조의2 (사이버 모욕)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제311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제307조, 제309조, 제309조의2, 제309조의3 및 제311조의2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실 명 제</p>	<p>[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p>	<p>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p>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p> <p>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p> <p>[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6(이용자정보의 제공청구)]</p> <p>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개정 2009.1.28></p> <p>1.</p> <p>2. (중략)</p> <p>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p> <p>[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p> <p>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02.12.26, 2007.1.3></p> <p>1. 이용자의 성명</p> <p>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p> <p>3. 이용자의 주소</p>	<p>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p> <p>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p>
---	--

ISP의 게시물 삭제 및 임시 조치	<p>4. 이용자의 전화번호</p> <p>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p> <p>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p> <p>[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p> <p>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종략</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p> <p>[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방송통신위원회안></p> <p>정보통신망법 제112조(정보의 삭제요청 등)</p> <p>① (원조항과 동일)</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종략</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한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대하여 게재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p> <p>⑥ 임시조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 기간을 심의위원회의 결과통보가 있는 날까지 연장한다.</p> <p>⑦ 종략</p> <p>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p>
---------------------	---	---

		<p>제1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략...)</p> <p>21. 제1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p> <p><나경원 의원안> 제44조의2(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① 전략</p> <p>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정보게재자는 이 기간 중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 내에 정보게재자의 삭제에 대한 동의가 있거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p> <p>⑤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체없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44조의10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하며,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이 있는 날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은 분쟁조정부의 결과통보가 있는 날까지 연장 하며, 분쟁조정부는 판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여야 한다.</p>
--	--	--

		<p>⑧ 하략 ⑨ .. ⑩ ...</p>
명예훼손 분쟁조정	<p>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p> <p>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p> <p>③ 하략</p>	<p><나경원 의원안> 제44조의10(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p> <p>②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계·법조계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와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조정 및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수행하되, 분과별 조정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부의 장이 선임한다.</p> <p>③ 이하 중략 ④ .. ⑤ ...</p> <p>⑥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과별 조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u>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u>(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과별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p> <p>⑧ 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이</p>

		<p>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p> <p>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를 받은 자,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정보게재자, 제44조의3제1항의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분쟁조정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⑩ 하략</p>
--	--	--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안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통신의 비밀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헌법 제18조)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비밀의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국가의 합법적인 감청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때문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감청할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였다.

과거 우리 역사 속의 도감청 사건들은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능욕 당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하에서 1961년 중앙정보부 내에 20명으로 구성된 과(課) 단위의 도청 조직이 유선전화 도청을 시작하였고, 1968년에는 60명의 단(團) 규모가 약 70만 명의 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도청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역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의 말기에는 1,000만 회선으로 전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한국통신공사가 발족하여 통신 도청을 협조 지원하면서 도청 대상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이들 군사정부 하에서 도청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중앙정보부와 1980년에 이를 개편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국군보안사, 검찰경찰 등의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당시의 체신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같은 하위기구의 협조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군사정권은 자의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개인의 기본권과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 군사정권은 쿠데타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으면서 발생한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감시권력을 확대하고 합법적인 폭력성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른바 문민정부 들어 1993년 12월 비로소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정보/수사기관의 도청이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5년 7월 21일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일명 X-파일)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한국 사회는 또다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1994년부터 이전의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도청을 시작하였으며, 안기부(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개편)에서 불법적인 도청전담 조직(미림팀)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도청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안기부는 법원 허가 없이 유선 전화를 도청하였다. 검찰이 전 미림팀장 공운영 씨의 집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에 나타난 도청 건수는 총 554회에 달했다. 도청 피해자는 정치인이 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계 인사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 등이었다.

야당으로서 처음 집권한 김대중 정부하에서도 도청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과 1999년 언론을 통해 "CDMA 휴대폰은 기술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누차 확인하였던 김대중 정부는 이면에서 CDMA 이동통신 도청 장비를 직접 개발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받았다.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은 1996년 1월부터 디지털 이동통신이 상용화되자 전화국을 통하는 유선중계통신망 도청 장비인 'R2'(1998년 5월 개발 완료)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 장비인 'CAS'(1999년 12월 개발 완료)를 직접 개발해 8국 사무실에 장비를 차려놓고 도청에 활용했다.

이러한 정보/수사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계속 개정이 되어 왔으며 그 주요 취지는 도감청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통제를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청에 대한 법률적 통제를 개선하려는 노력 이면에서 인터넷 로그기록과 IP 주소 등 새로운 통신 영역에 관한 감청 규정이 계속 추가되면서 사실상 감청은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기관의 비밀스런 불법 감청을 통제하는 데 사실상 무력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도감청에 대한 통제는 무엇보다 정보기관의 비밀 감청 권력을 제어하는데 그 핵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대개의 감청이 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 있어 그 과제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다 하겠다.

<표> 전화번호/아이디 건수별 감청 통계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발표)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국정원감청 비율(%)
2003	165	648	5,424	203	6,440	84.2%
2004	106	554	8,201	289	9,150	89.6%
2005	100	241	8,082	112	8,535	94.7%
2006	43	131	8,440	51	8,665	97.4%
2007	41	95	8,628	39	8,803	98.0%
2008	24	94	8,867	19	9,004	98.5%

2.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2008년 10월 30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법사위 대안은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개정안들에서는 먼저 통신제한조치(감청)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구비의무를 신설하였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의 구비의무를 부과하고, 장비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17대 국회안에서는 소요 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달라졌다.)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15조의2
 ②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15조의3(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 장비 구비의무는, 향후 정보/수사기관이 직접 감청 장비를 운용하지 않고 간접 감청을 의무화함으로써 감청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안 제9조제1항제1호) 그러나 간접 감청에서 정보기관의 일부 감청은 예외로 두었다.(안 제9조제1항제2호)

<안>

제9조 ① (상략)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8항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단용전기통신법」 제2조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GPS 위치정보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자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제1항제2조)

<안>

제15조의2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 모든 통신사업자등에 감청설비 구비 의무 부과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장비를 통한 오남용과 유출 위험 또한 상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현실에서 통신사업자는 국가 권력에 매우 취약하다. 통신사업자는 과거 안기부/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R2와 같은 불법 도청 장비를 자신들의 설비에 설치하거나 불법회선을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 요구에 협조하였던 바 있고, 이에 감사원이 2000년 5월 12일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도감청과 그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협조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감청의 상시화가 일반 국민에게 끼칠 영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사실상 감청 자체가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조성하면서 개인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9년 의견에서는 "통신서비스 기술을 감청에 적합하게 개발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 가입자에게 감청에서 자유로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결과에 이를 수

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 대상이 너무나 막연하고 광범위하다. 전화서비스 사업자라는 단서를 두긴 하였지만 전화서비스가 유무선과 인터넷을 가로지르는 융합서비스 시대에 이는 휴대폰은 물론 인터넷 전화, 화상 전화, 인터넷 메신저, 인터넷 채팅 등 사실상 현존하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개시된다는 말일뿐 아니라 미래 불상의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까지 규정하는 것이다.(예컨대 고유번호로 음성통신은 물론 문자 채팅과 파일 송수신도 가능한 Skype 서비스는 인터넷 전화인가, 메신저인가, 채팅인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려는 국내 통신사업자는 감청설비 구비의무의 대상인가 아닌가?) 이는 감청대상을 엄격히 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9년 의견에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의 구비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 전화, 화상전화, 인터넷 메신저, 인터넷 채팅 등 사실상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합법적 감청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법률에 감청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감청설비 구비의무화의 모델이 된 미국 범죄수사통신지원법(CALFA)의 경우 '지역전화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제공자에만 적용되어 이메일이나 인터넷에서와 같이 정보를 창출하고 보관하는 등의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 게시판과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제공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개정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메신저, P2P 서비스에도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2) 외국인 감청이라는 명목으로 정보기관에 직접 감청 허용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기관에 대해 직접 감청을 허용한 것이다.

정보기관 감청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유일하게 영장주의의 예외가 허용되어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감청의 경우 법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제7조 제1항 제2호), 긴급한 경우 그나마의 대통령 승인조차 불필요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긴급감청과 달리 외국인에 대한 정보기관의 긴급감청은 36시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법원 등 어느 곳에도 통보할 필요가 없다.(제8조 제8항) 여기서 '외국인'은 통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이라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그간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주장해 왔듯이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전용선을 이용한 암호화된 통신을 정보기관이 직접 해독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입법 목적이 법문에 명확히 한정되어 서술되었어

야만 했다.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거론되는 1) 암호화하거나 비인가자 접근 불가 시스템 2) 감청 로그기록을 법원에서 관리토록 방안 또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시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해법도 정보기관의 직접 감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감청의 절대 다수를 집행하는 정보기관에 대한 직접 감청의 허용은 '감청의 간접화'라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감청'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유일하게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하고, 감청 대상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정보기관 외에 사전/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입법/사법적 감독 구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 감청의 명분으로 정보기관이 직접 감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은 오남용 소지가 매우 클 뿐더러, 정보기관에 비밀스런 감청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비밀 감청 권력의 전횡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3) 모든 통신사업자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의무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제삼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자료 보관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과태료로써 강제한 것은, 통신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통신의 비밀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8년 1월 16일 발표한 의견에서 "사업자가 보유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토록 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일정기간 자료를 보관케 의무화한 것은 개인의 정보보호에 역행되고, 범죄수사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통신기록 확인의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아직 발생되지 않은 범죄 해결 목적으로 범죄 예비단계도 아닌 일반인 통신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은 법제정 취지에 위배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2009년 1월 22일 발표한 의견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개정안처럼 일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포괄적으로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행정벌을 부과한 것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위헌의 소지가 높다. 미국은 자료보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자료보관 의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사상 최대 34,451 명의 청구인으로 이루어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3월 11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본안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명령도 함께 내렸다. "6개월 동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으로 생성되는 전체 통신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기본법 제10조 1항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인격권보호에 중대한 위협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가능성은 국민의 통신행위를 광범위하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사례

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한 전기통신교환의 무편견성과 전기통신장치의 편견없는 보호에 대한 신뢰를 전체적으로 의심케 할 우려가 있다." 독일의 데이터 저장 의무의 모태가 된 유럽 자료보관 의무 지침(EU DIRECTIVE 2006/24/EC)은 다수 나라가 그 적용을 연기하고 있고, 유럽법원에서 위헌심사 중이다.

이러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어 왔기에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의무를 도입하였어도 필요 보관 기간을 지정한 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삭제토록 의무화하였다. 독일 전기통신법 제113a조 데이터 저장 의무 (11)항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의무를 지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해서만 저장된 데이터를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소거하거나 소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크게 우려스러운 점은 인터넷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공개/비공개 게시물과 댓글의 로그기록 등 통신 내용을 유추하기 위하여 활용될 위험성이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IP주소와 같은 로그기록에 대한 보관도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익명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독일 전기통신법 제113a조 데이터 저장 의무 (8)항에서도 "통신의 내용과 접근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이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장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고, 유럽 지침도 "본 지침은 법인과 자연인의 통신데이터와 위치데이터 및 가입자 또는 등록된 이용자의 확인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에 적용된다. 본 지침은 전자적 통신망을 사용하여 문의된 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통신의 내용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1조 2항)고 하고 "통신의 내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저장되어서는 아니된다"(5조 2항)고 규정하였다.

심지어 유럽지침과 독일법은 유선/무선/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서비스,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특정한 자료만 보관하도록 명시하였다. 미네르바 게시물과 같은 공개/비공개 게시물과 댓글 게시자의 IP주소를 추적하기 위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 우리 수사기관의 관행이었고 이번 개정안이 그러한 수사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게시물의 IP주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보관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정보기관을 비롯한 비밀 감청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5년 드러난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감청 실태도 충격적이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정부가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일이 있을만하면 발생해 왔다. 2004년 1월에는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통상부의 보안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일간지 기자의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이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조회한 담당 부서가 지방감찰청장의 승인서가 필요한 국정원 수사국이 아니라 국정원장의 승인서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대테러보안국이었음이 밝혀져 논란이 크게 일었다. 2009년 1월에는 검찰과 경찰이 국방부 '감사처분 요구서'를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통화내역 조회는 이 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범죄수사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언론의 취재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통신서비스가 고도로 발달하고 일상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평범한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이 통신서비스 여기저기에 기록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유선전화, 무선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통신 수사는 범죄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잡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오남용이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가 과거보다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가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오남용이 횡행하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은 통신 비밀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새로운 제도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끔찍한 감시 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1)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

첫째,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80여 개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제5조)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제7조)에는 매우 완화된 요건으로 감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다.

이처럼 폭넓은 감청 사유를 보장하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감청 방식에 따라 대상범죄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감청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고 막연히 특정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가해야 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감청 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허가서 한장에 무려 2개월+2개월(연장) 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따라서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을 중지하고, 감청 허가 청구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허가서 한장에 허용되는 감청 기간을 10일+(연장)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정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국정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무영장 감청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간 또한 현행 4개월+4개월(연장)에서 2개월+2개월(연장)으로 제한해야 한다.

넷째, 법원의 허가 없는 긴급 감청을 폐지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국정원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면서도 "급하면 나중에 허가 받으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 리 없다.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특히 많은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허가없는 감청을 위하여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36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종료되는 감청의 경우 그 통계도 제대로 집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섯째, 감청의 집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

감청 집행시 허가서 표지뿐 아니라 허가서 전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집행 동안 입회인을 두어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한편, 감청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법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며, 집행이 끝나면 감청 대상자에게 예외없이 상세히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

첫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의 기록을 오랜 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둘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한다.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오남용 소지가 높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엄격한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오십만 건을 육박한다는 점은 실제로 이 제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명시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는 법원의 허가 제도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보화는 감시권력의 범위와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권력의 감시 방식은 비인격적이고 전자적인 데이터 감시로 이동하며,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을 아우르는 통합감시가 가능해진다. 이는 미행이나 신체적 감시에 따른 피감시자의 저항과 노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보다 은밀하게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정보화가 고도화할수록 생활의 많은 부분을 통신수단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보 감시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통제되지 않는 감시 권력의 비대화는 수집된 정보를 권력의 토대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등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정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더욱 고취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개선·운영하여 합법적인 감청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시각지대나 불투명한 부분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말라”는 법의 위헌성

- 박경신 고려대 교수

현재 인터넷 상의 검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은 검찰, 경찰, 방송통신심의위가 아니다. 바로 네티즌들 자신이다. 네티즌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조를 이용해 포털들을 통해 블라인드(임시 조치)시키고 있는 게시물들의 개수가 다른 방법의 검열보다 훨씬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르면 특정인이 포털에 게재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받았거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포털 측에 요청하면 포털은 최소한 그 정보가 30일 동안 임시로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즘 상당히 많은 수의 게시물들이 소위 ‘피해자’의 요청으로 임시로 차단되고 있다.

소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포털이 1차적으로 차단해주는 것까지는 좋다. 인터넷에 올리는 게시물이 빠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퍼질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그러나 게시물이 실제로는 합법적인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게시자가 다시 복원을 요청해도 계속해서 30일 동안 차단되는 것이 합당한가.

게시물 하나 하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행사의 결과물이다. 위 조항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결과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있는 인터넷게시물들은 모두 30일 동안 임시차단되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타인이 반대하는 말은 30일 동안은 하지말라”는 법조항과 등가이다. 위와 같은 상황은 명백히 위헌이다. 요즘같이 정보의 가치가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줄어드는 세상에서 30일간 억제하는 것의 위헌성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 임시조치의 폭은 너무나 넓다. 모든 명예는 복잡다기한 사실관계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하나의 신기술을 두고 서로가 자신이 ‘국내 최초 개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두 기업의 주장은 서로에게 명예훼손이 된다. 단지 한 기업의 ‘최초’ 주장이 다른 기업을 ‘2등’으로 만들어서 뿐만 아니라 한 기업의 ‘최초’주장은 다른 기업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명예훼손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포털은 두 기업의 신기술 홍보 게시물을 모두 임시조치 처리해야 할 것이다. 신기술을 개발해놓고도 다른 기업의 기분을 거스름까봐 홍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포털들이 피해주장자의 일방적인 요청만을 듣고 임시차단하더라도 게시자 입장에서는 그 게시물이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선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임시조치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털 상대로 복원을 구하는 소송도 불가능하다. 물론 포털들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44조의2조 4항이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44조의3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포털에게 합법적 게시물에 대해 내려진 임시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야 한쪽이 비합리적인 주장만 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털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과 다름없다. 특히 44조의3이나 44조의2 4항이 백지수표를 주었으니 포털 측에서는 어떤 게시물이든지 임시조치를 하면 손해가 없지만 임시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포털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44조의2 1/2항 상의 삭제 의무를 행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44조의2조 1항과 2항은 더욱 더 명백히 위헌이다.

위 조항들은 포털업자들에게 대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자들에 대한 얼토당토않은 차별적 규제이기도 하다. 신문 방송 등의 어떠한 다른 매체도 누군가 나타나서 보도내용에 대해 피해를 단순히 “주장”만 하였다고 해서 보도내용을 반복하거나 삭제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방송국에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저 드라마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해서 곧바로 30일간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여기에 이번에 한나라당이 상정한 개정안들의 문제가 있다.

첫째, 나경원 의원 안은 게시자가 포털의 조치에 불복하면 분쟁조정부에서 회부하여 72시간 내에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안은 7일 내에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두 가지 안 모두 일견 게시자가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경원 의원안은 이 분쟁조정 마저도 피해주장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도록 하고 있어 불복 기회를 주는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입증책임을 게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분쟁조정이나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 이길 때까지 게시물은 계속 내려져 있는 상태가 된다. 즉 합법적인 게시물이라고 할지라도 포털이나 피해주장자의 의견에 따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3일 또는 7일간) 게시물이 내려져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개 행정기관이나 그 행정기관이 임명한 분쟁조정부의 결정에 의해 게시물의 게재 또는 삭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 권력의 정책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정기관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포털업자 및 게시자는 방통심의위나 분쟁조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따르고 말겠지만 게시물이 추후 사법적 판단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둘째, 나경원 안과 정부 안 모두 포털에게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의무는 추후에 포털들에게 불법정보의 게시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김명재, 소리바다 사건). 결국 포털들은 피해자들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도 삭제와 임시조치에 열을 올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모니터링 조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도 하지만 현행 임시조치 제도와 함께 생각할 때 반대해야 하는 대한민국 고유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안은 포털이 44조의2 1항과 2항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3천만원씩 물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포털들이 삭제요청이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검열에 열을 올리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와 Communication Decency Act의 notice-and-take-down조항들이다. 이는 ISP가 특정한 절차를 준수하면 ISP가 저작권침해나 음란물 유포의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다. 위 법들을 이해하기는 쉽다.

이미 우리나라 현행법에 DMCA의 정신을 계수하여 만든 법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103조 2, 3, 5항은 인터넷 콘텐츠의 확산성을 고려하여 누군가 피해를 주장하면 ‘무조건’ 삭제를 하고 게시자가 복원을 요구하면 ‘무조건’ 복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피해자가 삭제를 원하면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이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게시물들이 처리된다. 현재도 게시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어차피 법적으로 근거도 없지만)는 5% 미만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법으로 포털에 대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의 혜택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게시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잡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선택인 것이다.

<참고- 관련기사 1>

“온라인글쓰기가 운전만큼 위험한가?”

- 박경신 고려대 교수(2009년 4월27일 한겨레)

구글이 유튜브의 게시 기능을 없애면서까지 실명제 적용을 거부하였다.

‘익명성이 웹의 정신’이라는 말은 틀렸다. 많은 카페나 웹사이트들이 이용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약속에 따라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확대실시된 실명제는 강제적이라서 문제이다.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에게 공개하지 않을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형법 215조와 같은 “범죄수사에의 필요성”과 같은 특별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만 사생활 및 사적인 정보의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 신원 공개도 마찬가지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떴떴하면 왜 실명 등록을 못하는가’라고 다그치는 실명제 찬성자들도 길거리를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원공개를 요구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불쾌해할 것이다. 인터넷실명제 반대자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54조에 따라 포털들이 모든 게시물에 붙어 있는 실명을 영장도 없이, 게시자에 대한 고지도 없이 수사기관들에 넘겨주고 있어, 실명이 스크린에 떠있지만 읽을 뿐 글쓰기를 할 때마다 실명을 국가에 등록하는 ‘순수 실명제’라고 봐야 한다.

물론 강제적 실명제가 필요할 때도 있다.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는 사기 및 탈세의 위험성 때문이다. 자동차에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의 파괴성과 이동성 때문이다. 청소년유해물을 보는 사람에게 성인 인증을 위해 주민번호를 강제하는 것도 이를 청소년이 보았을 때의 유해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글쓰기가 자동차 운전, 금융거래처럼 위험한 행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익명의 글쓰기는 도리어 사상의 전파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위험’이 있

더라도 보호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정권 시절 탄압을 피해 독립과 자유를 주장한 수많은 익명의 글들을 보라. <폭풍의 언덕> 저자 에밀리 브론테는 여성 작가들에 대한 편견을 피하기 위해 ‘Acton Bell’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시대의 편견과 권력의 탄압을 피하여 자유로운 비평과 예술활동을 한 필명 사용자들은 ‘몰리에르’, ‘볼테르’, ‘줄라’, ‘트로츠키’, ‘조지 오웰’ 그리고 벤저민 프랭클린, 사드 백작, ‘오헨리’, ‘조르주 상드’, 심지어는 아이작 뉴턴도 있다.

온라인 글쓰기라고 다를까? 온라인의 글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볼 수 있거나 퍼 나를 수 있지만 이것은 게시자의 통제 밖의 일이며 방송과 달리 독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독자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하여 실명 등록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어떤 장르의 책이 잘 팔린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장르의 저자들은 모두 실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다.

인터넷실명제 하에서는 불법게시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어차피 의도적으로 불법게시물을 올릴 사람들은 자신의 실명과 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의도하지않고 불법게시물을 올리는 자들은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이러한 제도로 인해 합법적인 게시물을 쓰려는 사람들의 글쓰기가 줄어들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스스로 불법물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 때문에 강제로 위축되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인 실명제 사이트에서 불법게시물이 줄어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길거리 범죄를 막겠다고 길을 걷는 사람들 모두에게 명찰과 주민번호를 달고 다니도록 강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라. 길에 나가기 자체를 꺼려할 것이다.

<참고- 관련기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jieun@pspd.org)
제 목 참여연대, 임시조치, 인터넷실명제 관련 손해배상소송 및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 모집
날 짜 2009. 6. 12 .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임시조치된 게시물 및 인터넷실명제로 확보한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유출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모집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최근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포털에 의해 임시조치 당했거나, 인터넷실명제로 등록된 개인정보가 경찰에게 무단 제공된 네티즌의 신청을 받아 포털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이에 참여할 원고 및 청구인을 오늘(6/12)부터 각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2.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44조2항은 포털사업자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누군가 명예 훼손 주장을 하기만 하면 30일간 임시조치(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시조치는 인터넷상에서 '남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무조건 30일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1조4항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명예훼손 주장은 비난이나 비판 게시물에 대해서가 대부분이고 현행법은 권리를 침해했다는 일방의 주장만으로도 표현물을 무조건 내리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사후에 법정으로부터 권리다툼이 이어져 합법적인 표현물로 판명이 나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임시조치 당한 30일 동안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는 위헌적 행위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4. 영리목적의 게시물은 제외하고 최근 2개월 안에 임시조치 당한 게시물의 작성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필요사항은, 1)임시조치 당한 게시물의 사본 또는 사본이 없을 경우 내용에 대한 설명, 2) 포털에서 보내준 임시조치 통보문 3) 본인의 연락처로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로 보내주면 된다(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이메일 freeinternet@pspd.org).

5. 한편 정보통신망법제44조5의 ‘제한적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포털 사이트에 모든 형태의 글이나 콘텐츠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실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각 포털에 제공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3에 따라 수사기관이 특정 게시물의 게시자의 신원확인을 원할 때 언제든지 법원의 영장 없이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통보조차 없이 제공될 수 있다. 이는 헌법제12조3항의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인터넷실명제 자체의 위헌성을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물론 영장도 없이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네티즌의 신청을 받아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6.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3에 따라,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수사기관에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털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특히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람은 포털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의해 볼 것을 권고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에 참가하고자 하는 네티즌은 (1) 관련 게시물의 내용 (2)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시일 (3) 위의 시일을 확인해 준 포털의 이름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로 보내면 된다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freeinternet@pspd.org). 끝.

심각한 ‘표현권’의 침해

- 윤여진 사무처장 (언론인권센터)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를 IPTV를 통해서라도 꽤나 열심히 챙겨보았었다.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이 몽땅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하는 ‘남자이야기’. 쓰레기만두사건, 석궁사건, 미네르바 사건, 용산사건, 사이코패스 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씨실과 날실처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드라마보다 더 엄혹한 현실

드라마 내용 중에는 ‘마장가’라는 이름으로 미네르바의 사건을 극화시킨 내용이 있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유포를 이유로 체포된 ‘마장가’를 보며 등장인물 중 하나인 미국변호사는 ‘말도 안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씩새없이 내뱉으며 분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실정법으로서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전기통신망법 47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때문에 국민을 구속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드라마가 아닌 현실 속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엄혹하다.

사이버모욕, 허위사실유포를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이 시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전기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해 합법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올린 게시글조차 사라지고 영구삭제되기도 한다.

임시조치로 삭제된 게시물

1) 언론사의 글을 그대로 올린 게시물의 임시조치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신고자 : ○○○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 장윤석·신지호 "용산 '사고, 도심테러적 성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1-21 오후 4:03:06)

- 한나라 입단속... "용산 참사 관련 TV 토론 안 나가"

▷ “고의방화” “도심테러”...유족 가슴에 ‘대못질’

(한겨레, 이유주현 최혜정 기자, 2009-01-22 오후 08:06:09)

-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등 책임전가 이어

- 공성진 최고위원도 강경진압 두둔 발언

- 당내서도 “공권력 집행과정이 문제” 비판

▷ 김석기 "결과적으로 유감"...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1-21 오후 5:57:08)

▷ 김석기 "불법폭력시위로 경찰이 희생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1-22 오후 6:12:14)

- 민주당 "사지로 몰아넣은 장본인의 후안무치"

▷ "제2의 전여옥 지향? 1000만 안티 대기 중"

(레디앙, 2009년 01월 21일 (수) 17:21:11 변경혜 기자)

-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 '과격시위 발언' 파장...정치권, 네티즌 비판 폭주

▷ 약자를 위해 살겠다던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1월21일 21시15분)[기자의눈]

- '억울한 죽음'을 없애겠다던 초심은 어디로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게시물의 임시조치

▷ 달리기대회 때문에....대구의 오만함 극에 달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71101114913211&p=yonhap>

이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세계에너지 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한마디로 세금 낭비에

빨갓) 유치에 나서고 있는 대구가 최근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과 댓글, 검색어를 온라인에서 삭제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19일 38개 국내 주요포털사이트와 동영상 UUC업체, 언론사에 '고담대구' 관련 글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기인합니다. 또한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는 이번 조치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포털 측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타 시도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블로거와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블로거나 네티즌, 시민들이 지역감정으로 특정 지자체를 악의적으로 폄하, 맹목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995년 4월 8일 대구 지하철 상인동 가스폭발사고(101명 사망, 201명 부상),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사건(192명 사망, 151명 부상)이란 대형사고와 요쿠르트 독극물, 총기 강도, 염산테러, 지하철 폭발 및 방화 등 각종 이상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와 경찰 등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대응치 못해 사고와 사건이 빈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인데, 이를 대구시가 과도하게 해석, 포장해서 네이버, 다음 등 거대 포털과 짹짹하여 완전 차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까짓 달리기 대회하자고, 시민들의 입과 눈, 귀를 모두 막아 버리겠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전국적인 언론 통제를, 대구에서 실현시키고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키겠다는 모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뿔!

▷'집회는 안 되고, 스케이트장은 된다는 '썰매서울'

<http://blog.ohmynews.com/savenature/199736>

블로거로서 블로그 검열과 통제에 저항하기 위해, 집회는 안 된다는 서울씨를 대놓고 까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씨로부터 '명예훼손' 신고를 당한 날, 밤길에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시청광장에 들어서서, 전깃불 아까운 줄 모르고 화려한 조명으로 불 밝힌 서울시청을 향해 손가락질과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집회와 시위를 불허한다는 서울씨는 서울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전 서울시장이 했던 것을 그대로) 잔디밭 위에도 또다시 인공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있더군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겨울도 겨울답지 않아, 매서운 추위도 없고 기온도 많이 내려가지 않아 얼음 어는 날이 많지 않은데 말입니다. 정말 생각 없는 짓을 시민들 세금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을 편집하다가, 무분별한 개발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터무니없는 행동들 때문에 붙은 서울시의 별명 '심시티서울' 대신에 다른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군요. 집회불어와 문화와 예술, 스케이트장을 연상시켜보니... '썰매서울'이라 부르고 싶네요. 아참 이 사진과 동영상, 게시글도 언제 친절한 서울씨와 선관위, 한나라당로부터 명예훼손 신고 당해, 다음, 티스토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블로그(제가 여러 개 블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에서 임시제한조치 및 삭제를 당할지 모르겠네요. ^^

3) 공권력 및 공인에 대한 임시조치

▷경찰청의 삭제 요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0688.html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2008년 5월과 7월, 포털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과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동영상은 어청수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작 부산문화방송에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청은 2008년 5월27일포털 14곳에 공문을 보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으며, 7월 21일 다시 포털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6월 이후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공적인 의혹 제기(더구나 원 제작자인 방송사에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근거로 무조건 삭제 요구를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삭제 요청을 경찰청장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경찰청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도 문제다.

▷경찰 폭력을 비판한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8170951&Section=03

2009년 5월 1일 있었던 시위에서 시위대에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에 대해 비판한 블로그 및 다음(Daum) 야고라 게시판의 게시물 다수가 임시조치되었다. 삭제를 요청한 사람은 당시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간부이다.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된 공무에 대한 비판 게시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4) 무차별 임시조치

▷ 2009/02/15 - [세상에 대한 쓴소리] - 농심비판의 반박글도 권리침해로 불러시킨 농심의 한심한 작태

위의 글은 농심의 무차별 권리침해 신고를 질타한 글이었습니다.

2008/06/19 - [세상에 대한 쓴소리] - ‘삼양라면 애용은 좋지만 농심을 비판할때 사실만으로 비판해라’ 이란 글을 보고 농심에서 권리침해 신고를 했구요. 1개월간의 조정기간을 걸쳐서 권리침해가 맞으면 글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영구블럭 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의 글이 농심을 질타한 글이 아닌 마녀사냥식으로 농심을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묻지마 권리침해 신고는 제 글의 의도와 맥락을 읽지 않고 농심에 대한 비판글 한줄만 본 것 같습니다.

5)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한 게시글의 임시조치

▷ 티켓무비 사례

<http://blog.daum.net/polelate/7883948>

2009년 3월 6일, 다음(Daum)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의 게시글 중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티켓무비. 어떤 사이트일까 궁금했다.’17)라는 제목의 글이 임시조치되었다. 임시조치 요청자는 티켓무비투어 주식회사. 이 글은 단지 티켓무비 사이트의 불편함에 대해 담담하게 기술했을 뿐이었다. 해당 게시글에 의하면, 티켓무비와 관련된 다른 이용자의 게시글들도 다수 임시조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자사의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명예훼손 요청을 한 사례이다.

6) 공익적 활동에 대한 게시글의 임시조치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관련된 게시글

▷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게시글

▷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와 관련된 게시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시정요구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시정 요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29191219&Section=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28일,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글은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를 컴퓨터 메모리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방통심의위 출범 후 심의한 첫 인터넷 게시글이라고 한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불법적인 표현도 아닌, 일상적인 사람들의 언어 생활 자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7599.html

2008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

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은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신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매일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올리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신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것을 독려했다. 이들 신문 및 광고주들의 요청으로 2008년 6월 다음(Daum)은 불매운동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들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한편, 2008년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게시물 중 58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 시정 요구를 하였으며, 이후 유사 사례들도 무차별 삭제되었다. 이들 임시조치 혹은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단지 광고주 목록만을 게시하거나, 광고주목록의 링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한겨레나 경향 신문의 구독을 독려하는 게시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의위는 시정 요구된 게시물들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는 해당 게시물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통금지되는 불법정보의 항목을 규정한 제44조의 7 1항 1호~8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44조의 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수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는 심의위가 임의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8년 7월 16일, 방통심의위의 시정 요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http://blog.daum.net/cbs5012/12337417>

다음(Daum)에서 '최병성의 생명편지'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게시물 중 하나인 '1000마리 철새 때죽음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24)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양회협회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게시자는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30일 후에 게시물은 복구되었다.) 이어 23일, 24일에도 게시물 18개가 추가적으로 임시조치되었다. 최병성 목사는 3년 전부터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 사용으로 시멘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08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가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환경부도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2009년 4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대상으로 올라온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 15건 중 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포털’, 표현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

최근 언론인권센터와 정보인권단체가 주관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이유로 국내의 한 포털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멘트 제조과정의 유해성을 알리며 공익적 목적 하에 환경문제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활동해 온 한 환경 블로거의 게시물에 영구삭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물은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른 삭제라고 하지만 삭제를 요청한 측의 주장대로 명예훼손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상태의 삭제조치라면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의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98. 4. 30. 95헌가16).

또한 대법원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7. 22. 2002다62494).

정치적이거나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의 건강권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경 블로거의 게시물이 블라인드(임시조치) 처리되고 삭제되는 것은 현행법의 모순이다.

‘임시조치’(‘전기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4조2항)는 명예훼손 방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포털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공공의 이익’마저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08년 1~7월 사이에 명예훼손 구제신청을 한 수는 네이버 4만1000여 건 다음 9500 여건이다. 최문순 의원은 네이버의 삭제율이 95%에 달해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나마 삭제율이 낮았던 다음도 요즘은 조금만 말썽이 일어날 것 같으면 임시조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관련해서 방통심의위까지 넘어간 민원은 2008년 3월부터 11

월까지 8530건. 그중에 1100건만이 최종적으로 삭제조치 됐다. 그렇다면 부당하게 30일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7420건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자율규제를 향한 현실적 대안 절실

지난 3월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자율정책안을 내놓았다. 또한 임시조치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인터넷 이용자들간의 명예훼손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민의 표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 중이라고 한다.

이같은 활동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인터넷 이용자들간의 명예훼손여부와 임시조치 및 삭제조치를 하겠다는 사업자들의 의지라고 보여진다. 다만, 자율정책기구의 역할은 보다 더 이용자의 입장에서 피해구제뿐 아니라 ‘시민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규제분위기에서 자율적인 성장과 대안들을 마련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포털이나 방통심의위는 심의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신청 건수, 삭제율, 피해유형과 사례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인터넷문화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포털과 방송통신심의위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임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은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인 논의와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 영향력 확대와 노동자들의 정보인권 보호

- 강희수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1. 인터넷 영향력 확대의 배경

* 인터넷의 개방적 구조에 의해서 정보개발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1)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와 자기표현의 공간

- 전 세계의 여러 통신망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로 인터넷의 구조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함.

2) 각종 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공간

-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사이버공간으로 모두 편입되게 되면서 모든 매체는 인터넷이라는 컬러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되는 특징을 가짐.

(인터넷 신문, 웹캐스팅, 인터넷 라디오, 인터넷극장 등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오프라인상의 모든 매체들은 이미 온라인과 연계시킴으로써 온, 오프라인의 벽은 거의 무너진 상황)

3) 현실세계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

- 인터넷은 기존의 물리적, 시간적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를 하나로 묶음.

- 시공간의 압축으로 국지적인 제약에 묶여 있던 정보와 자본 등이 거의 빛의 속도로 사이버공간 속에서 전송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정보혁명, 디지털 혁명으로 표현됨.

2.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T산업 재편

1) 이동통신: 휴대폰의 인터넷 머신화

① 휴대폰이 인터넷 단말기로 본격 전환

- 3세대 이동통신 보급 확대, 요금의 저액, 정액화, 풀브라우징 인터넷 구현 단말기의 증가, 모바일 콘텐츠 저변 확대 등으로 휴대폰이 인터넷 단말기로 전환 중
- 전세계적으로 170여개의 WCDMA폰, 93개의 스마트폰이 출시 중
- 3세대 서비스에서 SMS 이외의 모바일 콘텐츠 비중이 증가

② 휴대폰의 PC화를 지향

- 휴대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PC수준으로 활용하는 등

③ 이동통신 서비스, 휴대폰 OS, 콘텐츠 등 이동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개방과 분산의 트렌드가 가시화

-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이어 노키아도 자사 OS인 심비안을 개방하기로 결정

2) PC산업: 성능경쟁⇒ 인터넷 이용에 특화된 PC경쟁

①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경량, 저가의 PC가 부상

- 기존 노트북과 휴대폰 사이의 크기, 1kg이하의 무게, 500달러 이하의 가격, 기본사양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폼팩터

② PC성능경쟁의 한계,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신흥시장 개척 등이 PC업계가 모바일 인터넷 기기 경쟁에 뛰어들게 한 동인

- 소비자의 선호가 PC의 고성능화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선호로 이동
- PC의 저가격화를 통한 신흥시장의 수요 확대도 주요 동인으로 작용

3) TV: 텔레비전 2.0시대의 개막

① TV와 인터넷의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TV의 이용 패턴이 변화

- 2012년 경 TV콘텐츠의 25%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소비될 전망
- 전세계 IPTV 가입자는 2007년 약 1,300만 명, 2011년에는 4,900만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 (7,000만~1억명으로 전망하는 기관도 있음)

② 향후 TV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대화면으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창’으로 진화할 전망

- TV가 다루는 콘텐츠는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중심에서 인터넷 서비스(영상, 포털, 블로그), 개인 콘텐츠 등으로 확대(콘텐츠의 형태도 영상, 사진, 음악, 텍스트 등으로 다양화)

※ 인터넷이 바꾸는 산업의 지도

1. 미디어 산업: 미디어 밸류체인의 이원화

(밸류체인: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

1) 미디어 시장의 다원화, 양적, 질적 팽창, 구조적 변화 등이 가속화

- 콘텐츠 생산, 유통 비용의 감소로 미디어 시장의 진입장벽 지속 하락
(인터넷을 통한 영상 전송 비용은 향후 3~5년 간 약 70% 감소할 전망)
- 콘텐츠를 쉽게 생산하여 인터넷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기기 및 채널의 확대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대
- 미디어 업체는 물론 통신업체 등 IT업체들의 진입 확대로 미디어 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변모

2) 기존의 미디어 밸류체인이 두 축으로 양분

- 인터넷을 통한 2차적인 미디어 유통 채널이 새로이 형성(젊은 세대는 인터넷 미디어를 중심으로)
- 주요 미디어 업체들은 인터넷 유통을 통해 수익 다변화를 추구

2. 광고 산업: 온라인 광고의 전통 매체 추월 가속화

- 온라인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영향력을 확대

3. 인터넷 유통: ‘언제 어디서나 - 모바일 기기’로 확대

- 인터넷 이용 채널이 ‘가정 - PC’ 중심에서 ‘언제 어디서나 - 모바일 기기’로 확대되면서 인터넷 유통의 지평도 확대

4) IT산업 재편의 특징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IT산업이 재편
-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와 자기표현의 지향성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편
- 시공간을 뛰어 넘으면서 사적 영역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편

* 인터넷 관련 정책은 인터넷 및 IT산업,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미래 지향

적, 종합적 관점의 인터넷 정책 마련이 필요

3. 인터넷 통제시각은 IT산업 발전방향과도 배치

1) IT산업의 발전 방향과 배치되는 인터넷 통제 시각

-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IT산업의 발전은 더욱 자유롭고 개별화된 인터넷 이용을 지향하고 있음.
- 인터넷과 IT산업의 특성상 인터넷 통제의 시각으로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IT산업에 대응할 수 없음.
- 인터넷 통제도 IT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사고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 통제의 잘못된 시각

① 통제가 가능한 인터넷?

- MB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시각은 자유롭고 편리한 인터넷으로 보기보다는 통제가 가능한 인터넷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짙음.
- 인터넷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해 나가되, 완벽한 제도마련이 어려운 조건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고쳐나 가야 함.

② 단기에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공간?

- 인터넷 사용의 일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예방 서비스 개발, 인터넷 문화 개선, 이용자의 자정노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안전하고 완벽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위해 첫째, 필요한 법적 규제를 하되 최소화하고, 둘째 (비록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네티즌 스스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함.
- 이용자가 장기적으로 만드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③ 법적 규제, 진입장벽 강화?

- 인터넷 산업은 특성상 진입장벽이 거의 없으며, 법적 규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함. (일반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금융규제, 부동산 규제 등)이 진보적 시각이라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 규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함.)
- 소규모 사업자, 1인 사업자 등의 자유로운 경쟁이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

④ IT산업에서 과생된 문제야?

- 정부가 인터넷 산업을 육성할 의사가 없음. (정보통신망법에 네트워크 등 설비투자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조항만 있음)
- IT 분야에 있어서도 네트워크와 디바이스가 아니라 인터넷 콘텐츠와 서비스가 폭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상의 통제는 최소화되어야 함.

⑤ 사회의 문제야?

- 인터넷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고용, 교육, 환경 등 사회적 문제가 인터넷에 표출된 경우가 대부분임. 인터넷 자체를 타깃으로 통제하는 대책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오히려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쉽고 빠르게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함.

3) 노동자 통제 사례

①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 2007년 8월 14일, '조합원 추스리는 이랜드-뉴코아노조/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네이버에 의해 임시 조치됨.
- 임시조치 요청자는 사측인 '이랜드월드'.
- 이 글은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의 투쟁과 관련한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며, 게시자는 이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5줄의 견해를 남김. 이 게시물은 30일 후 복구됨.
- 법에는 30일간의 임시조치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② 한솔교육 학습지 노조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 2007년 8월 31일, 한솔교육 학습지 교사노조의 투쟁과 관련한 게시물이 한솔교육측의 요청에 의해 임시 조치됨.
- 이 글은 게시자가 재계재 요청을 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접근 차단된 상태인데, 한솔교육 학습지 노조와 관련된 기사나 자료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노조의 투쟁을 알리는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③ 주경복 후보 이메일 압수수색

- 검찰이 지난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해 열어본 것으로 확인됨.
- 압수된 통신 내용이 모두 혐의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무엇보다 7년치 통신 내용을 수색하는 것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임.

-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 내용에 대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 상황이 예상됨.

④ 핸드 폰 불법복제 삼성노동자 위치추적 사건

- 삼성 SDI, 수원, 천안 계열사 현장노동자들과 해고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등의 핸드폰이 불법복제되어 위치추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2008년 1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노동자의 위치추적을 삼성이 직접 했다고 인터뷰함. (삼성전자 인사팀에 근무한 서모씨로부터 위치추적한 사람이 신모씨라고 적시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음)

4. 노동자의 정보인권 보호 문제

1) 사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문제

① 사내 모니터링 논란의 핵심 문제

- 사내 모니터링 논란의 핵심은 사용자의 인격권에 대한 문제임.
(회사 컴퓨터와 인터넷 망을 사용하여 오고 가는 통신기록, 전자문서의 소유에 대한 무늬가 아님.)
- 사내 모니터링은 사측에 보장된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과 노동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인격권,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 권리들이 침해하게 부딪히는 측면이 있음.
- 사내 인터넷, 통신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 자신이 감시당하는지를 모르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강제 받고 있음.

② 사내 모니터링 도입의 몇 가지 원칙

-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의 인격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
 - 모니터링의 결과물은 정보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모니터링은 근로감시나 근로성과측정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정보보호를 위해 몇가지 원칙을 규정의 일부로서 명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
-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목적달성에 적합한 최소한의 모니터링만을 수행해야 함.
 - 직장 내에서의 전자적 모니터링과 관련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고, 또 관련 일반법 역시 추상적이고 포괄적임.

- 사내 모니터링과 관련된 분쟁들의 상당수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보호에 있어 누구의 이익이 더 큰가를 따져보는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화장실 비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화장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는 없다.)

○ ‘사업장 내의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는 노사 간의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은 감시설비의 설치에 대해 노사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대상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며, 사전 동의 역시 동의하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반하거나 자유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얻어진 것이라면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임.

- 자신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모니터링 사실의 공개가 ‘당신의 통신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공개라면 열람의 동의는 실제 통신 내역에 대한 접근을 당사자가 직접 허락하도록 요청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모니터링의 모니터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함.

- 사내 모니터링은 그 성격상 운영 인력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법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운영 내역, 접근 사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기록 보존이 필요함.
- 이러한 위험들을 운영인력의 몫으로 돌리기보다는 운영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 프로세스와 기술적인 통제장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2) 사내 인터넷 문제

- 직장 내 인터넷을 통한 노동 통제로 악용될 소지 많음.

3) 노사 관계 파괴의 주범

-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휴대폰 도감청은 노사관계 파괴의 주범이 될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에 담긴 국정원의 의도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의 개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통비법 개악을 반대하는 논리는 사회적으로 점점 더 알려지고 있지만 개악안에 숨어 있는 국정원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사회적인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비법 개악은 비밀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의 문제와 불가분이라는 점에서 통비법 자체의 개악 요소를 분석하는 것과 별도로 통비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국정원의 숨은 의도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1. 통비법과 국정원의 국민 감시

장여경 활동가의 발제문에 소개된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2007년 이전은 정보통신부)가 반년마다 발표하는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감청(통신제한조치:통화 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제도의 실행 건수 중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최근 발표된 아래 기관별 감청 현황을 보면, 국정원이 검찰이나 경찰, 군수사기관에 비해 국정원이 행한 감청의 건수가 압도적이다.

[표1] 기관별 감청(통신제한조치) 현황²⁹⁾

연도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07	상반기	18	39	555	11	623
	하반기	6	42	455	23	526
	합계	24	81	1,010	34	1,149
'08	상반기	6	32	562	8	608
	하반기	12 (100%)	43 (2.4%)	481 (5.7%)	8 (△65.2%)	544 (3.4%)

29) '08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2009.4.7.

	합 계	18 (△25.0%)	75 (△7.4%)	1,043 (3.3%)	16 (△52.9%)	1,152 (0.3%)
--	-----	----------------	---------------	-----------------	----------------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군수사기관 :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위 표는 감청 신청 문서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감청의 허가를 구할 때, 관행적으로 하나의 문서에 여러 개의 전화번호(또는 ID)를 기재하므로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래 표에 따르면, 검찰(1.33건), 경찰(1.25건)에 비해 국정원(8.50건)이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관행은 현행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수사 편의라는 미명 하에 최후수단으로서의 감청이 아니라 손쉬운 정보 수집을 위한 최초수단으로 국정원이 널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정원과 검경의 수사영역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통계수치는 감청 허가 과정에서 법원의 통제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

[표2]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³⁰⁾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 계	
'07	상반기	문서건수	18	39	555	11	623
		전화번호수	31	49	5,605	12	5,697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72	1.26	10.10	1.09	9.14
	하반기	문서건수	6	42	455	23	526
		전화번호수	10	46	3,023	27	3,106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67	1.10	6.64	1.17	5.90
	합 계	문서건수	24	81	1,010	34	1,149
		전화번호수	41	95	8,628	39	8,803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71	1.17	8.54	1.15	7.66
'08	상반기	문서건수	6	32	562	8	608
		전화번호수	8	44	5,563	10	5,625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	1.4	10.3	1.25	9.25
	하반기	문서건수	12 (100%)	43 (2.4%)	481 (5.7%)	8 (△65.2%)	544 (3.4%)
		전화번호수	16 (60.0%)	50 (8.7%)	3,304 (9.3%)	9 (△66.7%)	3,379 (8.8%)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3 (△20.0%)	1.16 (6.2%)	6.87 (3.4%)	1.13 (△4.2%)	6.21 (5.2%)
	합 계	문서건수	18 (△25.0%)	75 (△7.4%)	1,043 (3.3%)	16 (△52.9%)	1,152 (0.3%)
		전화번호수	24 (△41.5%)	94 (△1.1%)	8,867 (2.8%)	19 (△51.3%)	9,004 (2.3%)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3 (△22.3%)	1.25 (6.9%)	8.50 (△0.5%)	1.19 (3.5%)	7.82 (2.0%)

30) 앞의 글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을

이를 기관별 전체 감청 대상 전화번호(또는 ID) 건수로 환산해 보면, 국정원의 비중은 2007년 98.0%(전체 8803건 중 8628건), 2008년 98.5%(전체 9004건 중 8867건)에 이른다.

게다가 법무부가 제공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의 죄명별 감청현황 통계³¹⁾를 살펴보면, 살인(603회), 절도강도(434회), 마약(48회), 성폭력범죄(27회), 미성년자 악취유인(18회) 등 통상적으로 감청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범죄보다 국가보안법위반(1023회)의 경우에서 월등히 많은 감청 허가서 발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비법 개악안은 제안 이유에서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한다면서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 장비의 구비의무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불법적인 감청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 자체적인 감청은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통신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을 하게 되면 정보기관이 직접 감청하는 것에 비해 불법 감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대부분의 감청이 국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대상 범죄도 국가보안법(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범죄)임을 감안하면, 통비법 개악안은 국정원의 대 국민 감시기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국정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보안법 수사를 강화함으로써 정권에 반대하는 내부의 적을 제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통비법 개악안에 담긴 국정원의 의도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가 정보 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흔히 사용한 방법은 기관 출입이었다.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정원의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기관이나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노골적으로 기관과 단체를 출입하던 잘못된 관행이 금지되고 불법수사가 금지되자 국정원의 정보 수집 방법이 도청과 감청 위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³²⁾ 그 일단이 ‘X파일’사건에서 미립 팀 운영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은밀한 기관 출입과 대면 접촉(서울중앙지법 재판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염탐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원의 이런 정보 수집 방법은 사회적으로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간파한 국정원은 이번 통비법 개악을 통해 손쉬운 정보 수집을 위

31) 김옥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3쪽, 2007

32) 이승우,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 헌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5. 9, 565~566쪽

한 새로운 돌파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통비법 개악안에서 국정원의 의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을 추출해 본다.

첫째,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손쉬운 감청을 가능하게 한다.

개악안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의 구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협조의무에 불과했던 것이 이번 개악안을 통해 법적 의무로 승격된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정원의 부담은 줄어든다. 이제는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난 'CASS'를 들고 감청대상자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수단의 경우 통신사업자의 협조가 없는 더 이상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둘째, 휴대전화 감청의 공식화이다.

'X파일'사건 이후 국정원은 유선전화 도청 장비인 'R2'와 이동통신 도청 장비인 'CAS'를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의 공식 입장은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로도 이동전화는 감청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3] 통신수단별 감청 현황

연도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인터넷 등*	합 계	
'07	상반기	303	-	-	320	623
	하반기	200	-	-	326	526
	합 계	503	-	-	646	1,149
'08	상반기	252	-	-	356	608
	하반기	254 (27.0%)	-	-	290 (△11.0%)	544 (3.4%)
	합 계	506 (0.6%)	-	-	646 (0%)	1,152 (0.3%)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인터넷 등 : 전자우편, 비공개모임의 기사내용

휴대전화의 CDMA 기술 자체가 통신자의 위치에 따라 감청대상 중계기기의 위치가 달라지므로, 특정 통신장비만을 장악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해 대상자를 감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는 이른바 'CAS'라는 이동식 감청기기로 일부 해결이 되었으나, 'CAS'의 경우 감청을 위해서는 이동 중인 통신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물리적 추적이 불가피하여 편리하지도 용이하지도 않았다.³³⁾

33) 오길영, 통신비밀보호법, 통신국가보안법?, 진보평론 2007년 가을 (제33호), 2007. 9, 183쪽

그런데 이번 개약안의 핵심 중 하나가 휴대전화의 감청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동안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휴대전화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것도 통신사업자의 의무적인 협조를 받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일반 유선전화도 감청되므로 휴대전화로 확대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선전화에 비해 휴대전화는 오늘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통신수단이며 그 사용자가 1인으로 특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선전화에 비해 프라이버시의 보호 수준이 더욱 높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수준³⁴⁾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중전화보다는 유선전화도 더 높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유선전화보다는 개인별로 소지하는 휴대전화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감청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다.

개약안 제15조의2는 기존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감청장비의 설치 및 활용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휴대전화에 더해 인터넷 쪽지,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새로운 통신수단이 도입될 때마다 일일이 통비법을 개정하여 감청 가능하도록 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편지, 유선전화, 휴대전화로의 발전 과정에서 정보기관은 감청 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도입해야 했고 법제도를 만들어야 했다). 개약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개발될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간단하게 개정하거나 이에 시행령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개정의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음지’에서 일하는 비밀정보기관의 속성 상 그 업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를 곧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정원의 직무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물론 국회의 예산 통제도 거의 실효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 수단이 이처럼 조용하게, 논쟁없이,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 수단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넷째, 국정원 직원의 범죄가 퇴직 후까지 은폐될 수 있다.

통비법 개약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 관련 5개 악법이 제출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국정원의 직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약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은 국정원의 수사권에 “국정

34) 오길영, 위의 글, 184쪽

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국정원에서 퇴직한 자의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 및 퇴직 이후 재직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범죄를 포함한다)”(안 제3조 1항 4호)를 추가하고 있다. 현행 법은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만 다루고 있는데 퇴직 직원에 대한 수사권도 국정원이 가지겠다는 것이다.

애초 국정원직원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지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특성상 타 기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될 것을 염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이 하다 보니 그 수사 결과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준의 처벌만 이루어진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국정원 직원들이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안전관 역할을 함으로써 위법적 직무수행을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그런데도 국정원법 개악안은 이런 혜택(?)을 퇴직 직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통비법은 감청 등을 활용한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감청 자체가 가지는 비밀성을 감안할 때 국정원법 개악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통비법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될 염려가 크다.

